

제346회국회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30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3.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3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2.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계속) ..... 6
13.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계속) ..... 6
1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김경진 · 김태흠 · 이용호 · 김종회 · 김동철 · 이동섭 · 김광수 · 유성엽 · 김관영 · 박주선 · 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6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제출)(계속) ..... 6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18.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권성동 · 이종배 · 조훈현 · 정우택 · 윤한홍 · 김규환 · 이종구 · 이양수 · 김영준 · 윤후덕 · 이찬열 · 이석현 · 백혜련 · 심상정 · 주승용 · 권석창 · 김도읍 · 김성원 · 김영우 · 양승조 · 오신환 · 이명수 · 김관영 · 진선미 · 성일종 · 유은혜 · 한정애 · 오제세 · 백재현 · 윤관석 의원 발의) ..... 8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8
2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8
21.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8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8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황영철 · 박명재 · 홍문표 · 주광덕 · 경대수 · 임종성 · 이우현 · 윤관석 · 정용기 · 김성태 · 이학재 · 이명수 의원 발의) ..... 9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제출) ..... 9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 제출) ..... 9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변재일 · 김경진 · 민홍철 · 이용호 · 박준영 · 노웅래 · 최도자 · 이용주 · 박주선 의원 발의) ..... 9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회 제출) ..... 9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윤후덕 · 황희 · 박찬대 · 조정식 · 신창현 · 김종회 · 진선미 · 심재권 · 인재근 · 이재정 · 전해철 의원 발의) ..... 9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정태옥 · 송석준 · 정유섭 · 엄용수 · 윤한홍 · 김선동 · 이명수 · 박덕흠 · 이종명 의원 발의) ..... 9
3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 · 배덕광 · 조원진 · 박맹우 · 김성찬 · 주광덕 · 김정훈 · 조정태 · 주호영 · 정갑윤 의원 발의) ..... 11
31.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춘석 · 장정숙 · 김관영 · 장병완 · 최도자 · 박준영 · 강창일 · 노웅래 · 이용주 의원 발의) ..... 11
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 11
3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 11
3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김혜영 · 문희상 · 이찬열 · 이춘석 · 윤후중 · 이동섭 · 김경협 · 원혜영 · 김정우 · 전해숙 · 김진표 · 고용진 · 윤관석 의원 발의) ..... 11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 11
3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안철수 · 김혜영 · 박홍근 · 도중

환 · 신용현 · 조배숙 · 정성호 · 서영교 · 김민기 · 김종인 · 신창현 · 김정우 · 백혜련 · 김태년 · 정춘숙 · 임종성 · 노웅래 · 김삼화 · 고용진 · 백재현 · 전재수 · 손혜원 · 윤소하 · 최운열 · 문미옥 · 윤관석 · 홍의락 · 김철민 · 권미혁 · 윤후덕 · 황희 · 金成泰 · 김성수 · 심상정 · 조승래 · 소병훈 · 박정 · 최명길 · 안규백 · 김종석 의원 발의) .....	13
3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박홍근 · 김해영 · 윤후덕 · 손혜원 · 유은혜 · 윤관석 · 김민기 · 조정식 · 도종환 · 김태년 · 김영주 · 김경수 · 신창현 · 안민석 · 전해숙 의원 발의) .....	13
4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황주홍 · 장정숙 · 노웅래 · 김한정 · 윤영일 · 최도자 · 강창일 · 정동영 · 이춘석 · 이용호 · 김관영 · 변재일 · 이개호 · 민홍철 의원 발의) .....	13
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김해영 · 문희상 · 이찬열 · 이춘석 · 윤호중 · 이동섭 · 김경협 · 원혜영 · 김정우 · 전해숙 · 김진표 · 고용진 · 윤관석 의원 발의) .....	13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전재수 · 유은혜 · 김현권 · 신동근 · 인재근 · 설훈 · 오영훈 · 윤소하 · 문미옥 · 이찬열 의원 발의) .....	13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영춘 · 김정우 · 김현미 · 노웅래 · 도종환 · 박영선 · 서영교 · 손혜원 · 안규백 · 안민석 · 오영훈 · 윤관석 · 윤소하 · 윤후덕 · 이석현 · 장정숙 · 전재수 · 정성호 · 조정식 · 표창원 · 황주홍 의원 발의) .....	13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46.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49.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5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51.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 · 권칠승 · 윤소하 · 전재수 · 서영교 · 인재근 · 김경협 · 박정 · 이석현 · 오영훈 · 소병훈 · 강병원 · 박남춘 의원 발의) .....	13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김종희 · 이동섭 · 박주선 · 박주현 · 유성엽 · 김관영 · 정동영 · 최도자 · 양승조 · 조배숙 · 이용호 의원 발의) .....	13
5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강병원 · 김경협 · 도종환 · 박경미 · 이찬열 · 임종성 · 어기구 · 양승조 · 윤후덕 · 정춘숙 · 표창원 의원 발의) .....	13
5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김기선 · 이우현 · 김명연 · 김한표 · 이현재 · 엄용수 · 김현아 · 박대출 · 곽대훈 · 이양수 의원 발의) .....	13
5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 · 이동섭 · 김동철 · 김경진 · 이언주 · 장병완 · 박주선 · 전해숙 · 최경환(국) · 김한정 · 신용현 · 이용주 의원 발의) .....	13
5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김종희 · 이종길 · 조배숙 · 김관영 · 정동영 · 노웅래 · 김경진 · 김병욱 · 조훈현 · 박범계 · 이용주 · 김광수 · 윤영일 · 손혜원 · 이용호 의원 발의) .....	14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최도자 · 이용호 · 이용주 · 강창일 · 정동영 · 장정숙 · 박주선 · 이개호 · 김동철 의원 발의) .....	14
5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윤종필 · 박덕흠 · 전희경 · 조경태 · 김한표 · 김성태 · 김성찬 · 강석호 · 조원진 · 윤영석 · 이우현 · 박순자 의원 발의) .....	14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장정숙 · 이석현 · 김병관 · 황희 · 김영	

진 · 유동수 · 최명길 · 이개호 · 안민석 의원 발의) .....	14
6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홍철호 · 성일중 · 김성원 · 홍문중 · 염동열 · 정운천 · 김성찬 · 민경욱 · 김한표 · 이우현 · 송석준 · 이만희 · 조원진 · 엄용수 의원 발의) .....	14
6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
6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
6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
6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
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 · 권칠승 · 윤소하 · 전재수 · 서영교 · 인재근 · 김경협 · 박정 · 이석현 · 박남춘 · 김해영 · 박경미 · 김민기 · 이개호 · 이용득 · 안민석 · 김병기 · 박홍근 · 윤종오 · 김병욱 · 조응천 · 소병훈 · 강병원 의원 발의) .....	14
6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권석창 · 권성동 · 김규환 · 김세연 · 김용태 · 민홍철 · 성일중 · 정성호 · 정우택 · 정태욱 의원 발의) .....	14
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전재수 · 오영훈 · 안민석 · 도종환 · 이원욱 · 김정우 · 윤후덕 · 장정숙 · 손혜원 · 이석현 · 정성호 · 김상희 · 김병욱 · 황주홍 · 윤관석 · 서영교 · 조정식 · 김현미 · 박영선 · 노웅래 의원 발의) .....	14
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정운천 · 김승희 · 김재경 · 이현승 · 유기준 · 이우현 · 김성원 · 정태욱 · 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18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 · 정갑윤 · 광상도 · 이근현 · 강길부 · 최교일 · 최도자 · 노희찬 · 주승용 · 정성호 · 이춘석 · 권성동 · 유성엽 · 이상민 · 오신환 · 김관영 · 윤영석 · 박범계 의원 발의)(계속) .....	18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정태욱 · 김성원 · 김정재 · 최연혜 · 이채익 · 권석창 · 신상진 · 김명연 · 성일중 의원 발의)(계속) .....	18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문진국 · 김상훈 · 이명수 · 이철규 · 박명재 · 김선동 · 이철우 · 김정재 · 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18
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윤영일 · 유성엽 · 이춘석 · 최경환(국) · 김중희 · 김동철 · 김광수 · 백재현 · 김삼화 · 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8
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이종명 · 권석창 · 김상훈 · 박명재 · 염동열 · 경대수 · 이완영 · 신보라 · 정갑윤 · 광상도 · 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18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유기준 · 정갑윤 · 권성동 · 김성원 · 정태욱 · 경대수 · 김태흠 · 권석창 · 홍철호 · 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18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이동섭 · 김광수 · 정인화 · 최경환(국) · 김관영 · 김삼화 · 채이배 · 송기석 · 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19
1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윤영일 · 유성엽 · 이춘석 · 최경환(국) · 김중희 · 김동철 · 김삼화 · 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9
6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김경진 · 한정애 · 문미옥 · 우원식 · 황희 · 인재근 · 임종성 · 박남춘 · 윤후덕 · 김민기 · 설훈 · 김정우 · 송영길 · 진선미 · 민홍철 · 심재권 의원 발의) .....	19
7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용주 · 권미혁 · 정동영 · 김중	

로 · 김광수 · 김종희 · 윤영일 · 이동섭 · 최경환(국) · 박준영 · 이정미 · 조배숙 · 박선숙 의원 발의) ..... 19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도중환 · 전재수 · 문미옥 · 진선미 · 유은혜 · 이개호 · 한정애 · 김민기 · 조승래 · 신동근 · 소병훈 · 김영주 · 손혜원 · 최운열 의원 발의) ..... 20

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정우택 · 김석기 · 박인숙 · 정유섭 · 이우현 · 곽상도 · 김광림 · 주호영 · 배덕광 · 경대수 의원 발의) ..... 20

7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정우택 · 김석기 · 박인숙 · 정유섭 · 이우현 · 곽상도 · 김광림 · 주호영 · 배덕광 · 경대수 의원 발의) ..... 20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박광운 · 김정우 · 신경민 · 김현미 · 박영선 · 조배숙 · 윤종오 · 김종훈 · 김삼화 · 박경미 · 노웅래 · 홍익표 · 남인순 · 김혜영 의원 발의) ..... 20

7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0

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0

7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0

7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20

7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10시17분 개의)

원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79조의 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1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김경진 · 김태흠 · 이용호 · 김종희 · 김동철 · 이동섭 · 김광수 · 유성엽 · 김관영 · 박주선 · 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10시18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2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 사항 및 항만건설장비 등 선박시설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의 적용 특례를 두도록 하되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 · 공유재산의 전대 승인 폐지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관련 의문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 시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중소도시의 의견 제출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 및 유사 분야의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하고 의사 등이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한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삭제하고 형사처벌에 처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윤상직 위원입니다.

어저께 법안제2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이미 통과되었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때문에, 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88조의 벌칙에서, 소위 말해서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에서 지금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 이하, 3년이 되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일단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체포라는 것은 단순한 긴급체포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어려움

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위원장 권성동 2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때 좀 더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사위에 와서 원래 안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정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정호 국토부2차관, 윤학배 해수부차관님 그리고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현안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4개 부처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10시23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6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쳤지만 그때 전체회의에 계류할 했는데 계류한 사유는 국가재정법이 넘어오면 함께 처리하려고 보류하였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법사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0%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상정했습니다.

혹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

원 대표발의)(이주영·권성동·이종배·조훈현·정우택·윤한홍·김규환·이종구·이양수·김영춘·윤후덕·이찬열·이석현·백혜련·심상정·주승용·권석창·김도읍·김성원·김영우·양승조·오신환·이명수·김관영·진선미·성일중·유은혜·한정애·오제세·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운영위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윤근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회도서관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도서관 분관을 설치하도록 하며, 납본 부수 및 온라인자료 납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납본 부수 추가 요청과 관련하여 추가 요청이 예외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우리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신 우윤근 사무총장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회사무처 운영에 관해서 불만 사항이라든가 문제점도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너무 전관예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2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제19항·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잘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아직 안 오셨지요?

유섭·엄용수·윤한홍·김선동·이명수·박덕흠·이종명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정무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6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9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장기건설공사에 대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고, 연차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완료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건설하도급의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과 개정 내용의 조화를 고려하여 규정 순서를 변경하고 별칙에 개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

###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황영철·박명재·홍문표·주광덕·경대수·

임종성·이우현·윤관석·정용기·김성태·이학재·이명수 의원 발의)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제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황희·박찬대·조정식·신창현·김종회·진선미·심재권·인재근·이재정·전해철 의원 발의)

###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욱·송석준·정

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협조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기본계획은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구현되는 법률 체계이므로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모순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6년 11월 13일로 한시적으로 효력이 만료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도를 상시화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이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 하나만……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게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올라가 있는 모양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의 예산, 12월 2일 날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그런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이것은 조특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법률입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위원장 권성동 예.

○윤상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임종룡 위원장님, 조금 전에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제도를 신설한다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PEF라고 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지금 법안에 상정된 것처럼 창업·벤처투자기업 혹은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얘기합니다.

그게 사모라는 게 왜 붙었느냐 하면 통상은 50인 이상 하게 되면 공모펀드라고 하고 그보다 작은 숫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사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하므로 공모형 펀드보다는 규율이, 여러 가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8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24항·25항·2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개 부처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3분 범위 내에서 현안질의 할 수 있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3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
- 3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
- 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혜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
- 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권성동** 다음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방위사업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 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경력관 제도와 임기제 군무원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비상 시 소요되는 군무원 운용을 위해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체계를 통합·조정함으로써 군무원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희**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 법 시행 당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후보생 과정에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을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경력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계급·직군·직렬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방산업체 등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청과 사후관리 절차 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국방부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30항·31항·33항·36항·

37항 등 이상 5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3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회부의견입니다.

여기 주요내용 중에 사회복지무요원의 건보료 지급을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하던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 상태 등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에 보내서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여기에 관해서 병무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병무청장 박창명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무요원 가운데서 지금 한 95% 정도는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 약 5% 정도는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무요원도 국가에서 의무를 부과해서 병역의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되고 일부는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행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제37항 법률안은 제2소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31항, 제33항, 제36항,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4항, 제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장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사청장님, 워싱턴에 가셨었나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위원장 권성동 얼마 전에 가서서 주한미군 부담금이라 그러지요, ‘주둔 부담금을 증액 요청하면 증액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그 진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동시통역 과정에서 제가 의도했던 식으로 동시통역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의혹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실상은 뭐지요, 실제 발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쪽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동시통역이 돼 가고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장관님, EU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의 주한미군 부담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 50% 되고 일본이나, 독일의 13%보다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위비 분담금을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94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총 액수로 보면 일본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높고요.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은 이것을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데에 따른 전체 비용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지만 대개 40~5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익과 동맹정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

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트럼프 당선 직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우리가 전체 비용 중에 한 50%, EU가 전체 중에 한 삼십 몇 %인데 그중에 독일이 한 13% 부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같은 선진국 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미국 측에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고 미국 측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3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박홍근·도종환·신용현·조배숙·정성호·서영교·김민기·김종인·신창현·김정우·백혜련·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웅래·김삼화·고용진·백재현·전재수·손혜원·윤소하·최운열·문미옥·윤관석·홍의락·김철민·권미혁·윤후덕·황희·金成泰·김성수·심상정·조승래·소병훈·박정·최명길·안규백·김종석 의원 발의)
- 3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손혜원·유은혜·윤관석·김민기·조정식·도종환·김태년·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전혜숙 의원 발의)
- 4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 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후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
-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유은혜·김현권·신동근·인재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
-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영춘·김정우·김현미·노웅래·도종환·박영선·서영교·손혜원·안규백·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소하·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조정식·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 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 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 의원 발의)
-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희·이동섭·박주선·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
- 5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병원·김경협·도종환·박경미·이찬열·임종성·어기구·양승조·윤후덕·정춘숙·표창원 의원 발의)
- 5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김현아·박대출·곽대훈·이양수 의원 발의)
- 5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

김경진 · 이언주 · 장병완 · 박주선 · 전해숙 · 최경환(국) · 김한정 · 신용현 · 이용주 의원 발의)

**5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김중회 · 이종걸 · 조배숙 · 김관영 · 정동영 · 노웅래 · 김경진 · 김병욱 · 조훈현 · 박범계 · 이용주 · 김광수 · 윤영일 · 손혜원 · 이용호 의원 발의)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최도자 · 이용호 · 이용주 · 강창일 · 정동영 · 장정숙 · 박주선 · 이개호 · 김동철 의원 발의)

**5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윤종필 · 박덕흠 · 전희경 · 조경태 · 김한표 · 김성태 · 김성찬 · 강석호 · 조원진 · 윤영석 · 이우현 · 박순자 의원 발의)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장정숙 · 이석현 · 김병관 · 황희 · 김영진 · 유동수 · 최명길 · 이개호 · 안민석 의원 발의)

**6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홍철호 · 성일중 · 김성원 · 홍문중 · 염동열 · 정운천 · 김성찬 · 민경욱 · 김한표 · 이우현 · 송석준 · 이만희 · 조원진 · 엄용수 의원 발의)

**6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 · 권칠승 · 윤소하 · 전재수 · 서영교 · 인재근 · 김경협 · 박정 · 이석현 · 박남춘 · 김해영 · 박경미 · 김민기 · 이개호 · 이용득 · 안민석 · 김병기 · 박홍근 · 윤종오 · 김병욱 · 조응천 · 소병훈 · 강병원 의원 발의)

**6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권석창 · 권성동 · 김규환 · 김세연 · 김용태 · 민홍철 · 성일중 · 정성호 · 정우택 · 정태욱 의원 발의)

**6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전재수 · 오영훈 · 안민석 · 도종환 · 이원욱 · 김정우 · 윤후덕 · 장정숙 · 손혜원 · 이석현 · 정성호 · 김상희 · 김병욱 · 황주홍 · 윤관석 · 서영교 · 조정식 · 김현미 · 박영선 · 노웅래 의원 발의)

**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8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정부가 제출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

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 의사일정 제62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님, 문화체육부장관—지금 국정조사특위가 개회 중이어서 참석했습니다—대신해서 정관주 제1차관님,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박영근 차장께서 대리참석하셨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

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 표시를 신설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감독기관을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장직무대리 박영근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에서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실측설계·감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부실수리와 문화재 가치 훼손 등을 막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

체하겠습니다.

(이상 2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68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과학교육 진흥법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해당 분야의 진흥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지 않도록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원장 권성동 전문위원님, 그냥 항만 말씀해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41항, 제43항, 제48항 및 제50항 등 5개 법률안은 각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시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위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문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대입 수능시험과 모의평가 문제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의 인가에 관한 개정안 제46조제2항은 동 조 제1항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기타 일부 조문체계를 정리하고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은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예외인정의 기한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 개정문 형식과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은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명시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은 일부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3항, 54항, 55항, 63항, 65항, 66항, 67항, 68항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은 관광지의 전기시설 지중화사업의 비용부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문을 형식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제3조제3항의 심의위원의 임명과 제10조제1항의 기념재단 위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7항은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시 권리자 측과 이용자 측 위원 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과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 법률이 정하는 체육시설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1항은 대회 입장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합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은 미승인 게임물의 제작·배급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선수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5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전력시설 지중화의 경우에 지금은 관광단지만 한전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돼 있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관광지는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관광지로 확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전이 50%를 더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가 됐나요? 산업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산자부에서는 관광지까지 비용부담을 확대하면 한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 산업부에서 동의 안 했지요? 이게 아직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제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6항 농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기재부하고 합의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기재부에서는 기념사업에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명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 부분도 2소위로 넘겨서 기재부, 관계부처와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60항.

○위원장 권성동 60항은 말씀하셨고요.

○윤상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52항, 56항 2개의 법률안.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60항 지금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권성동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저는 의사일정 제38항 과학교육 진흥법입니다. 이것 2소위 회부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해서 국가에 예산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고, 교부금 사업인데 여기에다 별도의 국가 예산부담 의무를 중복으로 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것에 관해서 2소위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법안 관련 대체토론……

○이용주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38항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5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 56항도 포함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56항.

60항은 얘기 안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60항에 대해서는 김진태 위원님 다시 한 번……

○김진태 위원 60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원용하면서 문제가 있으므로 소위 회부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제38항 과학교육 진흥법, 그다음에 52항 관광진흥법, 56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60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이 있었습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44항과 관련해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현재 시험문제 유출·유포에 관한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조항을 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험문제를 공개하기 전 유출하거나 유

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오히려 5년 현재보다 낮춰 놔거든요, 업무방해죄보다. 그것이 타당한 건지 그것을 논의해서……

○위원장 권성동 전문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현재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계나 위력이 아니더라도 유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조항이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정형에 대해서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 결과, 업무방해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을 냈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위원장 권성동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44항은 회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항, 52항, 56항, 6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41항, 43항, 47항, 48항, 50항, 51항, 53항, 54항, 55항, 63항, 65항, 66항, 67항, 6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42항, 44항, 45항, 46항, 49항, 57항, 58항, 59항, 61항, 62항, 64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위원장 권성동 교육부총리님, 다시 현안질의 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법무부차관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현승·유기준·이우현·김성원·정태욱·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정갑윤·곽상도·이군현·강길부·최교일·최도자·노회찬·주승용·정성호·이춘석·권성동·유성엽·이상민·오신환·김관영·윤영석·박범계 의원 발의)(계속)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욱·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김명연·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주광덕·문진국·김상훈·이명수·이철규·박명재·김선동·이철우·김정재·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최경환(국)·김종희·김동철·김광수·백재현·김삼화·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종명·권석창·김상훈·박명재·염동열·경대수·이완영·신보라·정갑윤·곽상도·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

음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  
음·권성동·김성원·정태욱·경대수·김  
대흠·권석창·홍철호·김명연 의원 발의)  
(계속)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  
의)(손금주·이동섭·김광수·정인화·최경  
환(국)·김관영·김삼화·채이배·송기석·  
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1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  
춘석·최경환(국)·김종희·김동철·김삼  
화·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11시07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이 나오시지 않아서 심사 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 8항, 9항, 10항, 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무부차관 상대로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조사특위를 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을 아마 국정조사특위에서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께 없지요, 특별하게? 현안질의 없지요?

하나 더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장 권성동**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7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용주·권미혁·정동영·김중로·김광수·김종희·윤영일·이동섭·최경환(국)·박준영·이정미·조배숙·박선숙 의원 발의)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문미옥·진선미·유은혜·이개호·한정애·김민기·조승래·신동근·소병훈·김영주·손혜원·최운열 의원 발의)

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7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광운·김정우·신경민·김현미·박영선·조배숙·윤종오·김중훈·김삼화·박경미·노웅래·홍익표·남인순·김해영 의원 발의)

7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9.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9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8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정부가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운영하기 위해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실무담당자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69항, 제72항, 73항, 74항, 75항 법률안은 모두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76항, 78항, 79항 법률안은 모두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법률안은 시책의 수립 대상인 각급 학교의 범위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

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제2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은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서 양 법률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그 내용이 달라지면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나 공소시효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로부터도 공소시효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섭 위원 77항은 방금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성폭력법이랑 같이 봐야 돼서 2소위로 넘기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금태섭 위원께서, 77항인가요?

○금태섭 위원 77항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2소위 회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7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보면 재정 부담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6조의2항의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면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강병훈 전문위원, 78항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 등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무인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혼숙이나 성매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좀 현실화되어서 신분증을 자동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형태로 법을 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거기서 혼숙이나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등의 대통령령으로 영업하는 것,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출입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위원장 권성동 지도라는 것은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단속이면 단속이지 왜 지도를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단속권은 우리 여성가족부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러이런 게 문제가 되어 있으면 개선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그 투숙객을 상대로 지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영업소요.

○위원장 권성동 숙박업소를 상대로 지도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업체에 대해서.

○위원장 권성동 전문위원, 성매매피해자는 됩니까? 성매매를 하면 둘 다 처벌받는데 피해자가 있습니까?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법률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자가 누구를, 매수당하는 사람을 피해자라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성매매를 하는 쪽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현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똑같은 범죄자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라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 건지. 누구, 담당 과장.....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준해서 지원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성을 파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본다 이거지요? 법률상 성매매피해자라고 칭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정확한 겁니까?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인신매매라든가.....

○위원장 권성동 앞에 나와서.....

이게 도대체 장관님이나.....

○전문위원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피해자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구먼. 그러니까 결국은 강요당한 사람이, 거의 강간 피해자나 강제추행 피해자를 얘기하는 거네요?

○전문위원 강병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알선이나 강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매매.....

○위원장 권성동 다시 담당 국장이 얘기해 봐요, 담당 국장이.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성매매처벌법에 따라서 저런 사유에 해당되는 성매매 여성들

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 동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아니고, 강요당한 성 제공자만 피해자라 이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예, 법령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강요나 인신매매 등에 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것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전문위원 좀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번 했는데 방금 한부모가족지원법ियो,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임의규정이냐 필요규정이냐 이거를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했잖아요,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강병훈 예.

○김진태 위원 이것 몇 시에 한 거예요, 언제?

○전문위원 강병훈 제가 수정한 안이 아니고 원안입니다.

○김진태 위원 여기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강병훈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태 위원 무슨 말이에요? 법률수정안 여기에 6조의2가 개정안에는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수정안에 “실시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전문위원 강병훈 여가위에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우리 법사위에 넘어온 겁니다. 넘어올 당시에는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우리한테 그걸 배포한 건 언제예요, 의원실에는?

하여튼 이게 말입니다, 시간까지 뭘 꼬치꼬치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아주 임박해서 주고, 이런 쟁점에 관한 것은 이 검토보고에서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강병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이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기껏 얘기를 해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수정

이 돼 있고 한 것을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요약보고 할 때요.

○전문위원 강병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차후 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이게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꼭 강행규정만 법적 근거가 아니라 임의규정도 예산안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쥐도 되고 안 쥐도 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법적 근거가 돼서 달라고 계속 조르면 언젠가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2소위로 넘겨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오늘 일절 아무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정족수를 채워 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어떤 법안이 올라온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자료가 어젯 밤에 와 있더라,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못 본 상태로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토론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법안이 나중에 법사위에 통과를 했는데 당신은 그때 왜 찬성을 했냐 그러면 참 난감해요.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리 좀 볼 시간, 적어도 며칠은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정말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한데, 정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권성동 아니, 지금 법안은 타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오면 각 방에 올라올 때마다 다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조응천 위원 어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다 배포를 하고……

그러니까 보좌진들보고 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의사일정은 5일 숙려기간이 지나면 거의 자동으로 상정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물론 저도 저희 보좌진한테 계속 다그치고는 있습니다. 마는 전혀 불의타로 막 법안들이 올라오고 설명

을 하니까, 전문위원들이 검토 잘 했겠지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미리 자료가 와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채워 주는 건 아닙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법안에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이의 없으시지요' 하면, 그런 거지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채워 준다는 의미로 앉아 계시지 말고 당연한 의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전문위원, 저번에 의료법하고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이 있잖아요. 그 별칙조항, 그게 의료법하고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같은 범정형을 규정했잖아요, 같은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걸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우리는 의료법만보고,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은 이미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없이…… 그 안에 굉장히 독소조항이 있어요, 의료법 안에, 긴급체포와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검토의견을 주셔야 우리가 심사 과정에, 심의 과정에서 실수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기계적으로 좀 이걸 해 주세요.

우리 1소위에 관련된 형벌에 관한 조항들 있잖아요, 별칙에 관한 조항들. 이런 부분은 과도한지 안 한지,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타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 것 있잖아요. 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른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부처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은 우리 법사위에서 한 번은 걸러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동의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기계적으로 하실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령 개정안입니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하는 데 좀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이해해서 다음번 검토보고할 때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이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의 간사를 거쳐서 확정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확정된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취합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다 보니까 어제 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에 정한 대로 48시간 이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들, 48시간 이전에 상정되는 검토보고서를 상정이 안 되더라도 일단 완성된 대로 즉 보내 드리고, 그다음에 아주 시급히 상정해야 될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천 위원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조용천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재도 공무원이나 국가 대상……

○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예산지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 현재도 저희가 소액이지만 예산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구체화할 경우에……

○위원장 권성동 좀 법적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71항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7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72항, 73항, 74항, 75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71항, 76항, 78항, 7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장관님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교육부총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식 교육부총리님 상대로 3분 범위 내에서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엇그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는데 정말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결국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필진 구성은 공개가 됐는데 심의위원들은 여전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저희가 12월 23일까지 공개된 검토본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집필진이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고, 그 수정된 내용을 편찬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굳이 심의위원 명단을 지금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점이 있나요? 좀 더 빨리 공개를 하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심의위원은 외부의 어떤 영향이 없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여태까지 집필진도 공개를 안 해



서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심의위원을 공개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어질 경우에 자칫 실지 심의위원회의 원래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이 끝난 다음에……

○백혜련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지요, 심의위원 수요, 숫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 수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저도 사실 심의위원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23일……

○백혜련 위원 23일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계시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을 텐데 찬성과 반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거기서 의견을 받는 것이지 찬성 반대를 저희가 통계를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내용을 아직 통계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니다.

○백혜련 위원 만약에 지금 의견 수렴을 하셔서 가지고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국정교과서 철회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내용은, 의견을 주시는 것은 교과서에 집필된 내용에서의 오류나 편향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찬반의 의견이 거기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 어쨌든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미 국정교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대해서 너무 반대 의견이 많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러면 국정교과서 철회할 계획도 있으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내년 3월 학기에 학교 현장에서 우리 역사교육이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위원장 권성동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역사교과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고대사나 우리 중세사 문제가 아니라 근현대사 문제가 그동안의 검정교과서가 좀 좌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 아시다시피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지금 2만 7000불로 한 60여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통해서 산업화를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생을 거쳐서 민주화를 이룩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나무랄 데가 없는, 오히려 칭찬을 받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젊은이들한테 기업가 정신, 창업 정신 이걸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교육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교과서들은 그런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정신, 도전 정신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같이 기술함으로써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원장 권성동** 산업화의 공과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고 고루 기술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시대적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잘 기술이 된 것 같고, 민주화에 대해서도 잘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4·19 혁명, 5·18 민주항쟁 그다음에……

○**위원장 권성동**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다 기술이 되어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독재체제였음을 분명하게 서술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교과서가 좌편향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편향되어서 안 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할 때 그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심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교육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애국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국가관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초안이 나왔지만 심의위원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지고 제가 부총리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과거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사실 저는 정부 수립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거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부분이 북한의 정통성을 더 강화시켜 주는, 의미하는 그런 거라는 부분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수립’……

○**윤상직 위원** 수립으로 되어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바르게 시정이 됐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친일세력의 존재 자체를 흐리게 하는 그런 음모가 아니냐’ 또 반대로 ‘광복·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공에 대해서 폄하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그런 의혹들만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떤 관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책을 읽어 보시면 그러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그렇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저는 우리 친일세력에 대해서, 친일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잊어서도 안 되고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에도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권을 잃은 이후에 광복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으신 애국지사들의 공

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강조해서 기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것들은 기존의 교과서보다 훨씬 더 분량을 넓게 해서 기술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예,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교과서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법사위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성동	금태섭	김진태	노회찬
박주민	백혜련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이용주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전문위원	박종희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강병훈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국방부장관	한민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권익증진국장	이정심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병무청장	박창명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문화재청장직무대리	박영근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금융위원장	임종룡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고영한